**#별첨3.**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기본 설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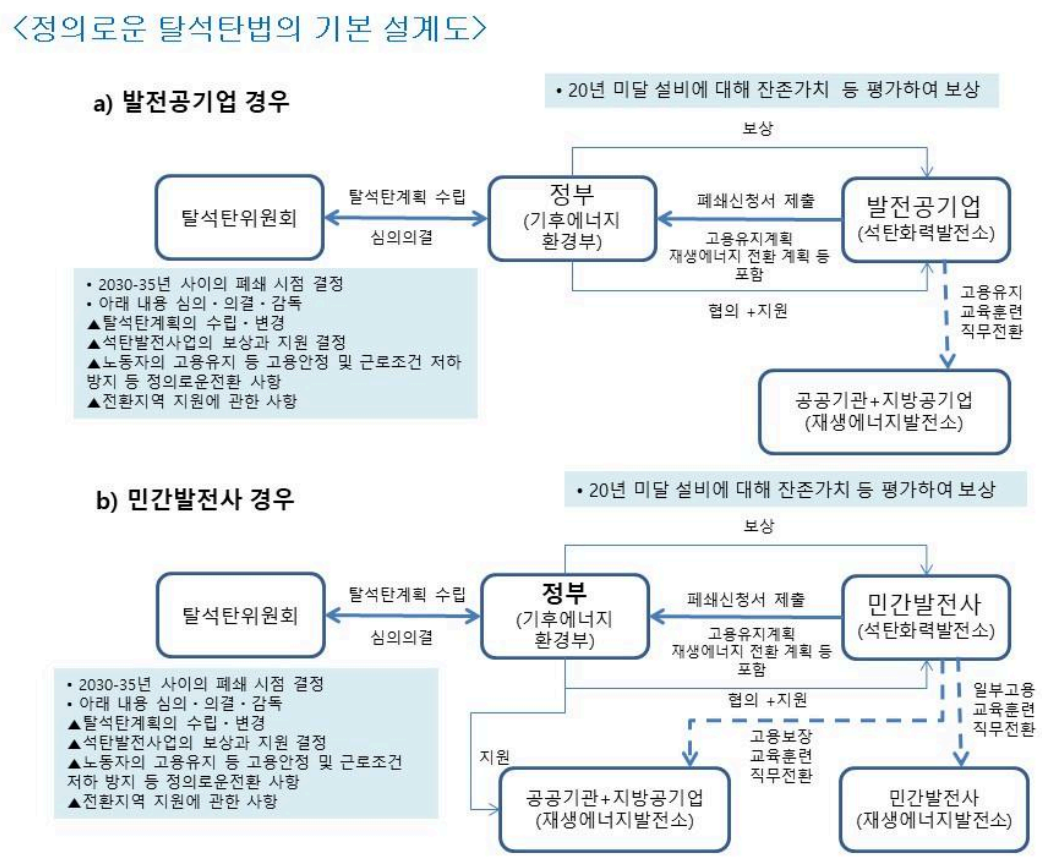


- 기후에너지환경부,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 수립과 실행의 주체. 탈석탄위원회는 심의 ·의결 · 이행감독의 주체
- 법 시행 후 탈석탄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시점을 설정(30~35년 사이)
-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
-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폐쇄신청서를 취합 후 종합 고려하여 탈석탄계획을 수립
- 수립된 탈석탄 계획은 탈석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고,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함. 수립된 탈석탄 계획의 결과를 각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
- 탈석탄위원회가 발전사업자의 폐쇄신청서 내용의 달성 기여도(탈석탄 기여도, 정의로운 전환 기여도)에 대해 심의·의결하면, 이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를 우대하여 보상 및 지원할 수 있음.
- 탈석탄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, 노동전환(고용유지 및 고용안정, 근로조건 저하 방지)을 실행함.
- 탈석탄계획에 따라지방자치단체장은 전환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.